

제5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제1항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을,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삽입한다.

제16조(증지취급 및 배수) 제1항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제27조(장부비치 및 검사) 제1항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3”과 같이 한다.

제28조(출납정리)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4”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 1. 1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1.7.22.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1991. 7. 11.

나. 제안자: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1991. 7. 19. 회부

라. 상정일자: 제1차 일반행정 특별위원회
(1991. 7. 20) 회부

제2차 일반행정 특별위원회
(1991. 7. 22) 의견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세정과장 박주남)

가. 제안이유

세정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시점(과년도)이 현재는 전년도 회계년도말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전년도 회계년도말로 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의 기준시점을 변경시키고자 하는데 있음.

나. 주요골자

- 포상금 지급 범위가 현재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것을, 회계년도말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규정.
- 창발적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의 삭제
- 1건당 징수액이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포상금 100원을 지급하였고, 2,000원 이상에 대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였으나, 개정 조례에

는 획일적으로 전부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지급.

- 세정 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포상금 3만원 지급규정 삭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속 존치는?	○ 기회실 소관의 부천시 조례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함.
○ 민간인에게 포상책정이 공무원의 독식을 위한 이시스트가 될 가능성 여부 및 주민간 위화감 조성이 될지 여부와 세수증대에 오히려 부작용(축소) 우려는?	○ 그럴리는 없으며 주민 위화감 발생은 있을지 의문이나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임.
○ 90년 체납액 징수 포상금 및	○ 2,434천원
○ 90년 이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 4,064천원
○ 91년 예산액은?	○ 17,820천원

4. 토론요지

해당없음

5. 수정안 요지

-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금 지급 규정 존치
- 민간인에 지급할 포상금의 동장 신청 규정 삭제

6.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 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

제한 공무원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호 및 제 6 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 3 항중 “제 2 호 내지”를 삭제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제 4 조를 삭제한다.

제 6 조 제 3 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